

하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자치행정과)

제출일 : 2020. 11.

1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: 「하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」 ⇨ 「하남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」
-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마련
-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 기준 마련
-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 마련
- 지급 방식 변경
 - 분기별로 학교장을 통해 지급 ⇨ 학기별로 장학생(또는 보호자)에게 직접 지급

3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·개선하려는 것으로 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녀 학업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